- (4) 데크플레이트는 2인 1조로 소운반 후 조립·설치하여야 한다. 특히 외주 보 위에서 소운반할 때는 지정통로를 사용하고 보 위에서는 외주 안전로프에 안전대를 걸고서 운반하여야 한다. 또한 데크플레이트 하부 추락방지망 설 치는 KOSHA GUIDE C-31-2011(추락방망 설치 지침)에 따른다.
- (5) 데크플레이트 운반 시 공동 작업자와 작업상 호흡 불일치 또는 이동 중 전 단 연결재(Stud bolt) 등에 발이 걸려 넘어져 전도될 우려가 있으므로 데크 플레이트 상부에 근로자 이동시 전도 방지를 위한 통로용 작업발판을 설치하여야 한다.





그림 21> 2인 1조 데크플레이트 소운반

- (6) 데크플레이트는 다른 건설자재와 비교해서 미끄러지기 쉽고 발을 헛디딜 위험성이 있으므로 콘크리트 타설 전까지 작업발판 설치가 곤란할 시에는 합판 등을 덮어 놓고 통행하여야 한다.
- (7) 데크플레이트 걸침부의 면이 고르지 않거나 불순물이 있는 경우에는 양중 전에 충분히 청소하고 수분 및 유분을 제거하여야 한다.
- (8) 데크플레이트가 바람에 의해 날아가거나 낙하하는 등의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보 상단 좌우 50mm 이상 걸치도록 설치하고, 1매 째의 데크플레이트를 설치한 후에는 곧바로 가용접을 하여야 한다. 이후 순차적으로 60cm 간격 이내마다 가용접을 실시하여야 한다.







<그림 22> 데크플레이트 가용접